

CHAPTER

01

# FTA의 개념과 협정문



# 1 FTA와 개념

## 1) FTA란?

###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석되며, 주로 양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배타적 무역특혜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NAFTA), 아세안(ASEAN), 한·미 FTA, 한·EU 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FTA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FTA는 RTA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으며, FTA보다는 RTA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FTA는 주로 두 국가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양자 간 FTA와 여러 국가 및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FTA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FTA가 양자 또는 다자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역내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이 역외 지역에 대하여 공동관세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니다. 즉 FTA는 체결국가 간의 역내에서 배타적으로 공동관세체제를 갖추지만 역외국가 및 지역과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 배타적 무역특혜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역외국가나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이 역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특혜를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혜를 역내에만 주고 역외에는 주지 않기 위해서 FTA는 **원산지증명**(Rule of Origin)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즉 역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생산요소들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역내에 있는 것에만 혜택을 주고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것은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일반 무역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FTA의 목표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비교우위를 통한 **특화, 노동분업** 등을 촉진하는 데 있다. 역내에 상품, 서비스 또는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 역내의 효용과 소득, 그리고 고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2) FTA와 경제통합

RTA는 인접국가나 일반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국가 간에 체결되는 경제통합협정을 의미한다. 지역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경제통합** 발전의 단계적 협정들을 의미한다.

RTA는 경제통합의 발전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된다.

첫째, FTA는 역내관세 철폐 등 회원국 간 역내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RTA이다. 그 예로 NAFTA, ASEAN의 AFTA 등이 있다.

둘째,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또는 역내 자유무역과 더불어 역외국가에 대해 공동관세를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협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관세동맹은 MERCOSUR가 있다.

셋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에 더하여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그 예로 EEC가 있다.

넷째,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단일통화를 발행하고 동일한 금융정책 등 역내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체결된 협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EU가 있다.

그런데 경제통합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다른 국가들 간 경제정책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주로 관련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제약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철폐하는 경제적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통합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 무역을 증가시키고 이로부터 생산성(productivity)을 개선하는 목적을 갖는다. 각 나라마다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비교열위**(comparative disadvantage)가 있는 제품은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극대화는 교역을 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생산 규모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생산 규모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유발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비용을 최소화해 경제적 이윤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더 큰 시장을 요구한다. 가령 자동차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자동차 생산은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다.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은 바로 시장의 수요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시장에서 필요한 자동차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생산된 제품을 무역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은 좋은 해결책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와는 달리 경제통합은 전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되기도 한다. 상호 간에 경제통합이 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갈등관계보다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과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거나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통합의 발전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제적 통합 관계는 Balassa(1967)<sup>1</sup>가 제시한 방법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경제통합의 발전 단계는 주로 아래와 같이 7개로 구분된다.

1. 특혜관세지역(preferential trading area)
2.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mon market)
5. 경제동맹(economic union)
6. 경제 및 화폐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7.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sup>1</sup> Balassa, B.,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The Economic Journal*, vol. 77, 1967, pp. 1 - 21.

표 1-1 경제통합 단계별 무역협정 형태와 범위

무역협정 형태	경제통합의 단계												
	역내 활동						역외 공동 장벽						
	통합 부문 및 장벽			공동정책			상품			서비스			
	상품 (관세)	상품 (비관세 장벽)	서비스	자본	노동	화폐/ 금융	재정	관세	비관세	서비스	자본	노동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TIFA	BIT TIF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동반자(Economic partnership)													
공동시장(Common market)													
화폐동맹(Monetary union)													
재정동맹(Fiscal union)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 및 화폐동맹(Customs and monetary union)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 및 화폐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주 : ■ -부분, ■ -전체,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무역 및 투자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양자 간 투자협정)

자료 : Wikipedia(wikipedia.org, 2015년 8월 23일 접속)

먼저 특혜관세지역은 관세를 부분적으로 주요 품목들에 대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에 의해 철폐하는 것으로 **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이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서비스, 자본이동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지대는 특혜관세지역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는데, 최소 2개 이상의 국가들 간에 역내에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할 때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 특히 상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관세동맹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단일관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동맹은 공동 화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시장은 FTA에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게 된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 관세동맹이 결합하는 개념으로 재정정책과 예산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동반하는 경제통합이다. 완전한 경제적 통합은 FTA에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화폐 또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물론 정치적 통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RTA와 같은 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국은 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만 이러한 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경제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별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며, 이러한 나라들이 체결한 경제통합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사례는 예상보다 많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표 1-2>를 참고하면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표 1-2 경제통합 단계와 주요 사례

경제통합 단계 및 유형	주요 경제통합 사례
경제 및 금융 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CSME(Caribbean Single Market and Economy/ 단일화폐 EC\$), EU(단일화폐 유로 €)
경제연합/동맹(Economic union)	CSME, EU, EEU(Eurasian Economic Union 또는 EAEU)
관세 및 금융동맹(Customs and Monetary Union)	CEMAC(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단일화폐 franc), UEMOA(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단일화폐 franc)
공동시장(Common market)	EEA, EFTA, CES
관세동맹(Customs union)	CAN, CUBKR, EAC, EUCU, MERCOSUR, SACU
다자무역지대(Multilateral Free Trade Area)	AFTA, CEFTA, CISFTA, COMESA, GAFTA, GCC, NAFTA, SAFTA, SICA

## 2) FTA의 인정

양자 또는 다자간에 FTA를 체결할 경우 WTO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WTO는 전 세계의 무역 자유화 또는 무역 확대를 위하여 상품에 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ariff, GATT)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규정하고 있다. GATT는 상품 분야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XXIV조를 일컬으며, GATS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일반협정 제4조를 말한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에 근간하여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GATT와 GATS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FTA를 인정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통상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위의 GATT 및 GATS 조항 이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에 결정된 것으로 GATT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또는 APTA<sup>2</sup>)**의 근거가 된다.

## 2 FTA의 확산과 원인

### 1) FTA의 확산

1990년대 초반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RTA는 2015년 4월 7일 기준으로 612개가 통보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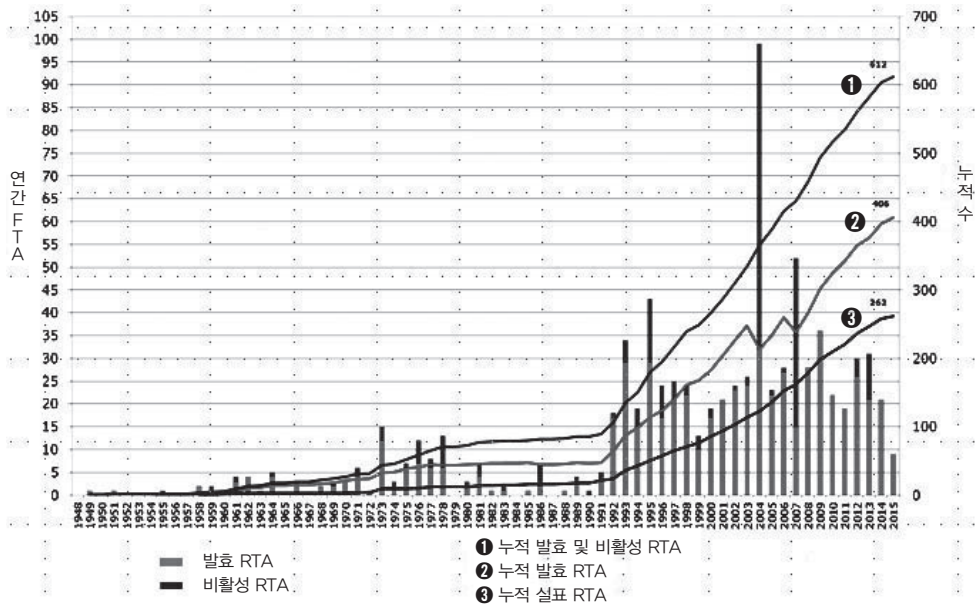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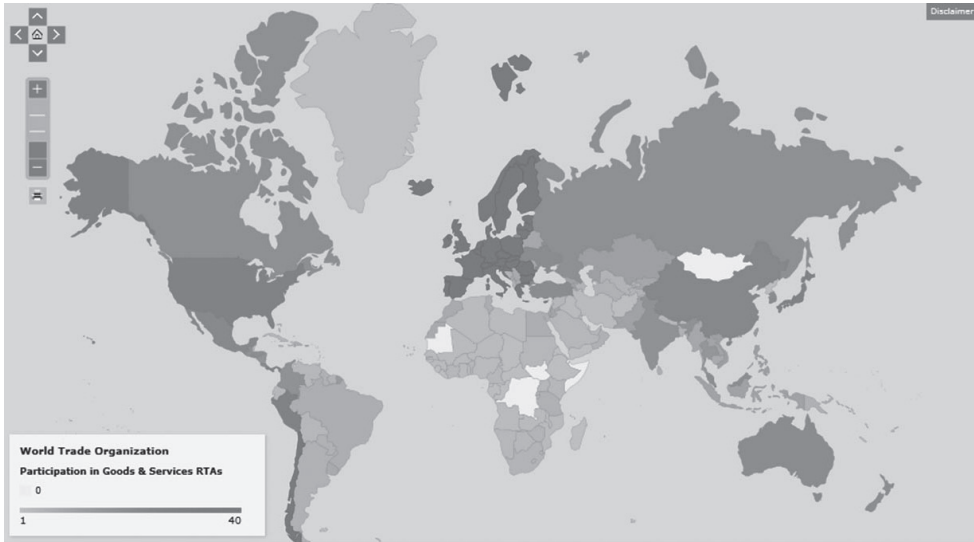


그림 1-1 WTO에 보고된 RTA 현황

자료 : WTO database(www.wto.org), 2015. 8. 23

<sup>2</sup> APTA는 방콕협정을 모태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1-2** 국가별 RTA 추진 현황

자료 : WTO database (www.wto.org), 2015. 8. 2.

어 있으며, 이 중 406개가 발효 중에 있다.<sup>3</sup> 612개의 RTA 중에서 426개는 GATT/WTO 24조, 즉 상품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포함되며, 149개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제4조에 의거한 협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426개는 상품에 관련된 FTA이며, 149개는 서비스에 관한 FTA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RTA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TA의 90%가 FTA이고 10%가 관세동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449개의 RTA가 실질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262개가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RTA의 급속한 증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8~1994년까지 RTA는 124개가 보고되었지만,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400개 이상의 RTA가 체결되거나 보고되었다. 이러한 RTA의 확산으로 RTA 역내 무역은 세계 전체 무역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RTA는 현재 유럽, 북미, 동아시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 간

<sup>3</sup> WTO database(www.wto.org), 2015. 8. 23.

표 1-3 경제적 통합 유형별 FTA 추진 현황

경제적 통합 유형	허용조항 (Enabling Clause)	서비스 (GATS Art. V)	상품 (GATT Art. XXIV)	합계
관세동맹(Customs Union)	8		10	18
관세동맹-동 의(Customs Union-Accession)	1		7	8
경제통합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127		127
경제통합협정-동 의(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Accession)		5		5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4		220	234
자유무역협정-동 의(Free Trade Agreement-Accession)	0		2	2
부분무역협정(Partial Scope Agreement)	14			14
부분무역협정-동 의(Partial Scope Agreement-Accession)	1			1
합계	38	132	239	409

주 : WTO에서 제공된 자료가 통계집계 기준일에 따라 약간씩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각 자료의 해석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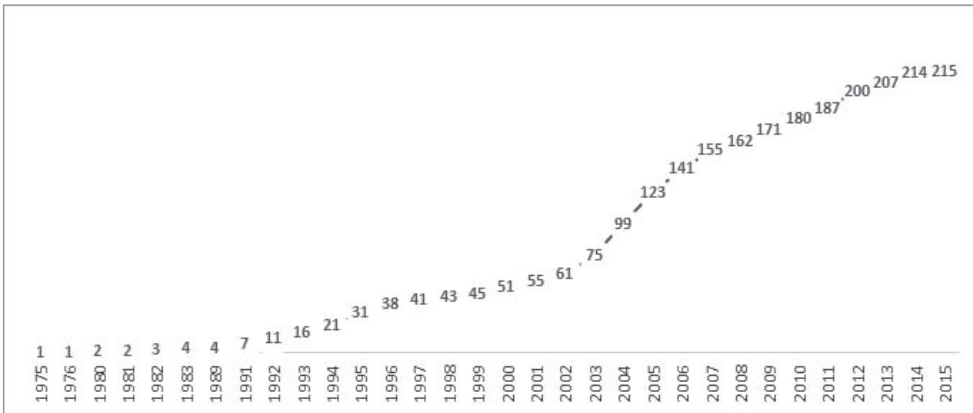
자료 : WTO database(www.wto.org), 2015. 8. 23.

의 RTA 또는 FTA보다는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RTA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침내 종결되었다. ASEAN도 ASEAN을 포함한 WTO 6개 국가를 포함하여 RECP(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를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양자 간 협정에서 다자간 그것도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거나 포함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한편 경제통합 형태별로 보면, 관세동맹 18개, 경제통합 127개, FTA 234개 등으로 FTA의 체결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그중에서 상품 RTA(GATT 제24조)가 5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협정(GATS 제5조)이 32.3%로 많으며, 그리고 개도국 간에 차별적 특별대우를 허용하는 RTA인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 약 9.3% 정도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총 215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단위 : 개



**그림 1-3** 아시아 지역의 FTA 체결 현황 및 추이

자료 : ADD fta database(<http://aric.adb.org>). 2015. 8. 23.

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FTA 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현재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 간 FTA를 더 많이 체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1991년 이전에는 양자 간 FTA에 관심이 없어 FTA를 체결한 국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991년부터 양자 간 FTA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2015년 현재 155개의 양자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다자간 FTA는 60개가 체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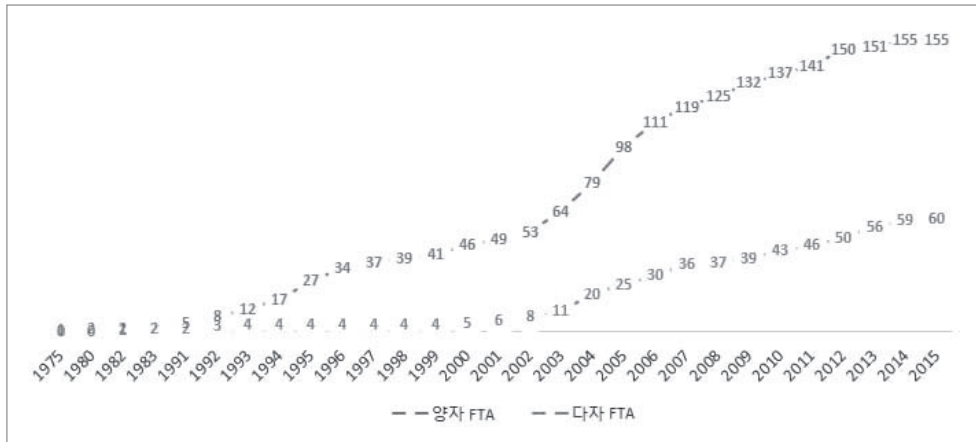
## 2) FTA 확산 원인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이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주의 확산과 국제정치적 의의

글로벌 무역은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WTO는 다자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무역제도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다자무역, 그

단위 : 개



**그림 1-4** 아시아 지역의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현황 및 추이

자료 : ADD fta database(<http://aric.adb.org>), 2015. 8. 23.

리고 최혜국대우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WTO체제가 국제무역의 자유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도하라운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다자협상안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으면서 WTO체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WTO 중심의 개방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의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주의는 양자 또는 몇 개의 나라가 모여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의 협정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관세동맹,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주의는 국가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패권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역주의 패권화의 대결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TPP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FTA도 중국의 경제권 확산과 한국의 중국 경제권 편입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주변국가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FTA의 체결은 체결국 간의 배타적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배타적으로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 즉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는 장기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는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키지만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국이 배제된 지역주의의 확산은 자국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주변국 또는 경쟁국들이 FTA를 통하여 지역주의를 확산하게 되면 자국 역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다.

## (2) WTO 다자협상의 대안 및 보완수단

1995년 WTO가 설립된 후 다양한 다자협상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WTO체제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제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처한 입장이나 수렴해야 할 의견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발전 단계가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거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의견수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WTO가 추구하면서도 제시되고 있는 무역확대 방안들에 관한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령 DDA에서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 부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농업 부문은 인도와 중국의 반대로 끝내 합의되지 못해 결렬되는 사태까지 왔다. DDA의 논의를 이어받아 **발리 각료회의**를 통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의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끝내 인도의 불참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채택하지는 못하였다. 즉 인도의 식량안보 이슈와 WTO협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WTO의 협상은 각국의 의견 수렴 가능성도 낮고 그 협상 타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은 WTO의 무역협정에 의존하기보다는 FTA와 같은 RTA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FTA는 원하는 상대

국과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무역질서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표 1-4 GATT 및 WTO체제와 FTA의 자유무역규범 특징

구분	GATT(1948~1994년)	WTO(1995~2000년)	FTA(2000년~)
주요 목적	다자간 관세인하와 국제무역 확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WTO체제를 기반으로 지역주의에 의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법인 여부	협정체제로 운영	WTO 법인체제	협정 당사국 간 협의 운영
주요 대상	주로 공산품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 적용 범위 확대	공산품, 농산물,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일부 환경, 노동 등은 부분적 또는 제외
기본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상회이익 균형/민감성 존중
무역구제	긴급수량제한(safeguard) 허용	긴급수량제한+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부과	긴급수량제한 +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부과 + 원산지 검증

주 : 최혜국대우의 원칙-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자료 : FTA포털 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www.fta.customs.go.kr)에서 재인용.

### (3) 경제적 이익

#### ① 시장 확보 및 경제성장 발판 마련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교역과 외국인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 먼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및 비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FTA 체결국가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의 증대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 제품들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즉 FTA의 체결로 인하여 목표시장(target market)에 더 많이 진출하여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FTA 체결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할 경

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된다. 이러한 무역장벽의 해소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즉 외국인들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높은 관세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여 생산 후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는 경제 규모의 확대는 물론 선진기술의 유입이라는 파급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하여 자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외시장 확보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무역 규모 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경쟁국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들에게 유리한 생산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FTA 체결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②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

FTA 협정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외국인들이 국내로 직접 투자를 할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는 자국기업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를 해준다. 특히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정책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대부분의 FTA 협정문에 분쟁해결 절차 및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기대된다.

## ③ 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대

FTA는 개방을 전제로 한다. FTA로 국내시장이 대외에 개방이 된다면 그만큼 경쟁이 심화된다. 경쟁의 심화는 각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물론 기술혁신 등을 모색하여 생산성 증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는 경쟁을 심화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④ 배타적 특혜 제공

FTA의 주요 특징이 FTA 체결국가 간에 배타적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협정에 따라 상품 분야, 서비스, 투자 등에서 협정 체결국 간에 상당한 혜택을 주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당사국 간 관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실익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 ⑤ 다자체제 자유화 선도

현재 WTO를 중심으로 다자체제가 부진하다. 하지만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역내 경쟁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추진된다면 지지부진한 다자체제에서 자유화를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즉 WTO체제에서 선도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

##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FTA는 양자 간 또는 체결국가 간에 무역을 활성화한다. 특히 **무역창출효과**와 **무역대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이나 **산업 간 무역**도 확대할 수 있다. 기존보다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교열위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즉 산업 간 무역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현지 진출한 법인에 부품 및 소재 또는 중간재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산업 내 무역을 확대한다.

한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FTA 협정에 의거하여 수입해야 하는데, FTA의 협정문이 국제 표준과 동일한 기준과 규정에 의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여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FTA는 국제 표준 적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3 FTA와 협정문의 주요 내용

#### 1) FTA의 주요 내용

RTA는 대부분 FTA를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FTA는 관세 철폐 등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1) 관세 철폐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는 단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급속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개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지만 안보관련 부분이나 식량관련 안보 등과 같은 일부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2) 원산지 규정

FTA는 체결국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 혜택을 주기 위해 모든 FTA는 원산지 규정을 두어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를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주요 공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각 협정 별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서비스

상품 중심의 FTA에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FTA에서 서비스의 개방도 포함하고 있다. FTA에서 논의되는 서비스는 개방이 가능한 금융, 통신, 교육, 의료이며 주요 이슈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개방에는 일부 서비스업종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일부 서비스업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있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한다.

서비스의 개방은 일반 상품의 개방과는 달라서 관세 철폐와 같은 개방 형식을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장접근,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지불 및 송금의 제한 완화 등을 통하여 개방을 해야 한다. FTA협상에서 이러한 개방 방법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의 정도가 달라진다. 즉 FTA 체결국들은 위의 모든 조항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조항만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 업종별로 각 조항의 개방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서비스 협정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력이동**이다. 서비스는 상품과 같이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비스는 상품의 이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력이동을 동반한다. 이는 서비스 무역의 공급 형태로 구분된다. 서비스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의 소비자 또는 공급자가 서로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동이 필수적이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FTA에서는 인력이동에 대한 양허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공급 형태와 인력이동의 형태는 <표 1-5>와 같다.

서비스의 공급 형태에 따라 인력이동의 개방 영역은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계약 서비스공급자, 독립전문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표 1-6>에 정리하고 있다.

서비스 협정에서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다. 이는 FTA 체결국 간에 무역 증진 및 상호 경제기술협력을 위하여 각국에서 발행한 기준, 자격, 허가요인을 인정하는 협정이다. 상대국이 지정한 인정기관에서 발생한 인증서를 FTA 체결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인력이동이 FTA 체결로 개방되면서 이 부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1-5 서비스 공급의 형태

형태		내용	예
Mode 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공급되는 서비스	은행, 통신 서비스, 원격 교육, 진료 등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다른 나라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	유학, 치료, 관광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해외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원 및 관리자, 전문가 주재	자회사
Mode 4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한 나라에 있는 자연인이 다른 나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재	외국기업 자회사 임원, 관리자, 전문인력, 개인 전문가 등의 이동(기술 공, 간호사, 요리사, 영어 강사 등)

자료 : WTO 홈페이지 내용 저자 정리

표 1-6 서비스 공급과 인력 형태

구분		정의	체류기간
상용방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공급계약/협상/판매자</li> <li>투자자 및 고용인(매니저, 임원, 전문가 등)</li> <li>상업적 주재 설립을 위한 서비스 판매자</li> </ul>	협정기준
기업내전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 법인의 관리자, 임원, 전문가 등이 현지 지점, 법인, 사무소 등에 고용된 자(일시체류자)</li> </ul>	협정기준
전문 인력	계약서비스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체결상대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li> <li>국내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FTA 체결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li>해당 분야에 적절한 교육 및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li> </ul>	협정기준
	독립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방문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li> <li>관련 서비스 필수 교육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li> </ul>	협정기준

자료 : 이웅 외(2014), p. 76의 <표 2-27>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 (4) 투자자유화

양국 간에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FTA에서 투자 분야의 주요 쟁점은 일반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조

견, 수용/손실/보상, 송금, 분쟁해결 등이다. 또한 개방 방식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 개방을 연기하는 투자유보 분야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나누어 결정하게 된다.

### (5)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내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국내 상품을 우선 구입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GATT에서는 정부조달을 내국민대우 조항에서 예외로 규정하였다(GATT 제3조 제8항). 그러나 정부조달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쿄라운드(1973~1979년)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동 협정에 따라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FTA에서도 정부조달을 포함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게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더불어 정부조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FTA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다.

### (6) 무역구제 및 무역원활화

한편 FTA로 인하여 급속하게 수입이 증가할 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FTA 체결국이 개방으로 인하여 수입국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MFN 수준으로 관세를 회복시키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무역구제의 요건 및 한계를 양국의 이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추진하여 양국의 무역 원활화를 도모한다.

FTA 체결국 간에는 상품 및 서비스가 국경을 이동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의 절차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여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된다. 가능한 국제적 표준에 기초하여 통관을 간소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정보의 교환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수출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의 통합 등 관세행정의 통합이 요구되며, 관세행정의 자동화 추진 등이 강조된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표준,